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

제안자 : 법제사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연 번	의안 번호	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 경과	
1	820	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	정성호의원 등 11인	2024.06.21.	상정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24.09.23.)
					소위 심사	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1소위(2026.08.31.)
						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1소위(2026.09.14.)
						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1소위(2026.09.16.)
2	21193	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	서영교의원 등 10인	2026.09.08.	상정	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(2026.09.09.)
					소위 심사	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1소위(2026.09.14.)
						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1소위(2026.09.16.)

가. 제43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9. 16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9회국회(정기회)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(2026. 9. 16.)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

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,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,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,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(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).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방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검찰청 차장검사”를 “공소청 차장검사, 중대범죄수사청 차장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”을 “해양경찰청 차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 단서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)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·관리하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”이란 법원, 법무부, <u>검찰청</u> 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<u>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중대범죄수사청</u> -----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방부</u> ----- -----.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)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, 공소장, 영장,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, <u>검찰청</u> 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<u>고위공직자범죄</u>	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 --- <u>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</u>

<u>수사처</u>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,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10조(협회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<u>대검찰청 차장</u>검사, 경찰청 차장, <u>해양경찰청 차장</u> 및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</u>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제17조(위임규정)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, <u>검찰청</u>, 경찰청, <u>해양경찰청</u> 및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<u>사처</u> 및 <u>국방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0조(협회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공소청 차장</u>검사, <u>중대범죄수사청 차장</u>-----<u>해양경찰청 차장</u>,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</u> 및 <u>국방부차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위임규정) ----- ----- -----<u>공소청</u>, <u>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<u>해양경찰청</u>,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및 <u>국방부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